

**총이사회 현행 규정**  
**STANDING RULES FOR THE GENERAL BOARD**

(1970 년 총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1971, 1980, 1987, 1994, 2009, 2010, 2013, 2014, 2015 년에 개정)

다음 규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총이사회 의 경건한 업무를 설명한다.

**1. 회원 MEMBERSHIP**

**1.1. 투표 Voting**

- 1.1.1. 총선정위원회 General Nominating Committee 는 17 명의 회원들을 지명한다.
- 1.1.2. 각 지역(33)은 회원중에 한명을 선출할 수 있다.
- 1.1.3. 총회행정사역 General Ministry 과 인종목회사역 Racial / Ethnic Ministry (13) 회원중에 각각 한명을 선출할 수 있다.
- 1.1.4. 초교파 기독교회원 Ecumenical members 2 명
- 1.1.5. 현재 선출된 총회 의장 Moderators
- 1.1.6. 총회장 목사 GMP
- 1.1.7. 가장 최근의 총회 의장
- 1.1.8. 전 총회장 목사 Previous GMP

**1.2.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Ex-Officio**

- 1.2.1. 지방회장 Regional Ministers(33)
- 1.2.2. 지방총회장 General Ministry Presidents or 인종목회사역 실행위원 Racial / Ethnic Executive Leader (13)
- 1.2.3. 고등교육국 Higher Education (신학생 1-2 명, 일반대학생 1 명)
- 1.2.4. 의회법학자 Parliamentarian

**2. 회의를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MEETINGS**

**2.1. 의제 준비와 채택 Preparation and Adoption of an Agenda**

- 2.1.1. 총회장목사는 행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의제를 준비한다.
- 2.1.2. 총회장목사는 의제 항목들을 받는다
- 2.1.3. 만약 어떤 이유로든 총회장 목사가 요청받은 대로 항목을 의제에 배치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사실과 결정을 위한 이유들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알리고 총회의장에게 보고한다. 만약 요청하는 당사자가 그 결정을 불만스럽게 여기면 행정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2.2. 총회장목사는 회의 30 일전에 사업 명세서 Business docket 를 준비한다.**

**3. 총이사회 위원회의 역할 ROLE OF THE GENERAL BOARD COMMITTEES**

**3.1. 사업위원회 역할로서의 행정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 serving as the Business Committee**

3.1.1. 새로운 사업 및 긴급한 문제 처리에 관한 권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위원회는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능을 발휘한다.

3.1.1.1. 제 2 총회 부의장 Second Vice Moderator 은 사업위원회 의장이 된다.

3.1.2. 새로운 사업 항목은 서면으로 제출되며 토론없이 사업위원회에 회부되며, 사업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각 항목의 처리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한다.

**3.2.** 총이사회 사업의 기타 항목은 본회의에서 심의 될 수 있으며, 또는 연구를 위해 총이사회 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으며, 차기 본회의에 보고 될 수 있다.

#### **4.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회원의 권리 RIGHTS OF MEMBERS EX OFFICIO WITHOUT VOTE**

**4.1.**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회원은 재청할 권리와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5. 총이사회 위원의 비용 EXPENSES OF GENERAL BOARD MEMBERS**

**5.1.** 행정위원회가 승인 한대로,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이사회 Boards, 위원회 Committees 및 위원회 Commissions 여행 경비 상환 정책에 따라 상환된다.

#### **6. 노동기구 ORGANIZATION FOR WORK**

총이사회는 이사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설립한다. 총이사회는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한다. 모든 총이사회 위원은,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 **6.1. 행정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

6.1.1. 행정위원회의 특정규정을 참조한다

**6.2. 통치위원회 Governance Committee** 통치위원회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sup>1</sup>의 삶과 사명, 일과 조직의 발전에 유용한 권고안을 제출한다.

6.2.1. 총이사회는 통치위원회는 2 명의 지방회장 regional ministers, 2 명의 총회 행정사역 실행위원 general ministry executives, 그리고 총사목위원회 the General Committee on Ministry (GCOM)와 총선정위원회 the General Nominating Committee(GNC)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이사회에 최소한 1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2.2. 총회 의장은 통치위원회 의장이 된다.

6.2.3. 통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사회 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비영리 이사회 운영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흐름을 유지한다.

6.2.4. 통치위원회는 신입 이사회의 오리엔테이션을 감독한다.

6.2.5. 통치위원회는 제안된 변경 및 수정 사항에 대해 도안 The Design 과 기타 통치 문서를 검토한다

---

<sup>1</sup> 도안 The Design 64

6.2.6. 통치위원회는 총사목위원회 the General Commission on Ministry 및 총선정위원회 the General Nominating Committee 보고서와 사업항목을 수령한다.

6.2.7. 총사목위원회 General Commission on Ministry 는 통치위원회를 통해 총이사회에 보고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sup>2</sup>와 함께 총회장 목사에게 책임을 진다.

6.2.7.1. 사역의 순서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권고한다.

6.2.7.2. 사역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고려하고 여러 지역, 일반 사역 및 기관의 일에 조연하고 협조한다.

6.2.7.3. 사역의 명령 (the Ordering of Ministry 의 제 2 장 F.d 와 F.e.)에 대한 신학적 기초와 정책 및 기준에 열거된 대로 성직자의 신분을 증명한다.

6.2.7.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목회의 신분에 관련된 항소의 최종 자리로서 봉사한다(지역의 결정에 따라 또는 지역에서 장기간 활동하지 않음에 따라)

6.2.7.5. 목회의 명령과 관련된 에큐메니칼 파트너와 협력한다.

6.2.7.6. 회원 은 최대 16 명이며, 총회장 목사에 의해서 임명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6.2.7.6.1. 지역회장 5 명

6.2.7.6.2. 총회장 목사 사무소 Office of the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 연금국 Pension Fund, 국내 선교국 Disciples Home Missions, 신학교육협의회 Council of Theological Education 의 각 대표 1 명

6.2.7.6.3. 교회생활사무소 Office of Church Life , 미국 크리스천교회 리더십 Leadership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에서 대표 1 명

6.2.7.6.4. 큰교회를 대표하는 회원 4 명

6.2.7.6.5. 위의 부분에서, 총회장 목사의 재량으로 2 명의 회원을 지명 할 수 있다.

6.2.7.6.6. 의장은 총회장 목사에 의해 임명된다.

6.2.8. 총선정위원회는 총회<sup>3</sup>에서 선출된 1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총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 통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이다:

6.2.8.1. 총회의 무급여 임원 후보 선출<sup>4</sup>

6.2.8.2. 총이사회의 위원 선정<sup>5</sup>과 행정위원회의 위원 선출<sup>6</sup>

---

<sup>2</sup>도안 The Design 38c 에는 총사목위원회 General Commission for Ministry 를 명명하고, 도안 The Design 86 에는 "총회가 목회직을 위한 일반 정책과 기준을 승인함"을 명시한다.

<sup>3</sup> 도안 The Design 70

<sup>4</sup>도안 The Design 81

<sup>5</sup>도안 The Design 56A

<sup>6</sup>도안 The Design 60

6.2.8.3. 교회의 인종/ 민족의 다양성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총행정사역 General Ministry 과 인종사역 Racial/ Ethnic ministry 의 위원을 각각 검토한다.

6.2.8.4. 총이사회에 인원을 선정할 자격이 있는 조직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 **6.3. 선교재정위원회 Mission Finance Committee**

6.3.1. 선교 재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조직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6.3.2. 선교 재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

6.3.2.1. 선교 자금 조달 시스템의 관리 제공

6.3.2.2. 제자 선교 기금 Disciples Mission Fund 개발 작업의 진행중인 업무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6.3.2.3 제자회 조직의 재정적 안정과 관련된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와 상담/중재위원회 Committee on Counsel and Mediation 와 함께 상의한다.

### **6.4.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6.4.1. 감사위원회는 총이사회 감사재심위원회 Audit Review Committee 와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로서 수행한다. 최소 2/3 회원은 총이사회 회원이 아니어야 하며, 회계, 감사 또는 유사한 직업에 대한 교육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4.2. 감사위원회는 총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6.4.2.1. 총이사회 재정부 책임 정책 General Board's Policy for Fiscal Responsibility 의 감독을 제공한다.

6.4.2.2. 위원회의 재심 활동을 토대로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6.4.3.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 관한 임무가 있다:

6.4.3.1. 제안 요청을 조정하고, 조직의 재무 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감사 기관을 선택한다.

6.4.3.2. 감사 범위 및 수수료를 검토 및 승인한다.

6.4.3.3. 연례 감사 이외의 활동에 제안한 감사기관의 참여를 검토 및 승인한다.

6.4.3.4. 조직의 감사원과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4.3.5. 필수적이고 권장되는 재정적 책임 및 공개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성과를 관리하도록 제공한다.

6.4.3.6. 정보 시스템 통제와 보안을 포함한 조직의 위험 관리 방법론 및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재심한다.

6.4.3.7. 조직의 이해 충돌 정책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고, 이사회가 정책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변경 사항을 알도록 유지한다.

6.4.3.8. 행정위원회가 제공한 재정 보고서의 적절성을 재심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6.4.3.9. 경영 서신 및 감사인 의견을 재심하고 해결한다.

6.4.3.10. 감사 과정에서 직면한 경영진과 관련된 심각한 어려움이나 갈등을 재심한다.

- 6.4.3.11.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전달되는 기타 사항을 재심한다. 그 기타 사항은 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것이다.
- 6.4.3.12. 조직의 재무 제표를 포함하는 게시된 문서를 재심하고,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재무 제표에 포함 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6.4.3.13. 판단이 적절하다면, 이 목적을 위해 외부의 변호인을 둘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직무 범위 내에서 주의를 끄는 문제를 조사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행동을 총회 의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6.4.3.14. 감사위원회의 재심 활동을 근거로, 행정위원회에 권고한다.

### **6.5. 상담과 중재 위원회 Committee on Counsel and Mediation**

- 6.5.1. 상담과 중재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총이사회의 갈등 관리 및 해결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6.5.1.1. 행정위원회 또는 총이사회와 관련된 불만 및 항소에 대한 감독, 정책 및 절차를 제공한다.
  - 6.5.1.2. 갈등, 중재 및 해결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된 중재자 목록을 유지한다.
- 6.5.2. 상담과 중재 위원회는 구조, 사명 및 기금에 관련된 갈등을 감독합니다.

### **6.6. 총행정사역 언약대화 위원회 General Ministry Covenantal Dialogue Committee**

- 6.6.1. 총 행정사역 언약대화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총회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특별한 사명을 위한 총행정사역과의 대화이다. 총 행정사역 언약 대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6.6.1.1. 언약 대화 과정을 5 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이사회와 총행정사역 이사회에 보고한다.
  - 6.6.1.2. 필요에 따라 언약대화 과정을 재심 및 개정하고, 승인을 위해 중앙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 **6.7. 총회 위원회 General Assembly Committee**

- 6.7.1. 총회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각 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추천하고, 총회 사업 항목을 후속 조치하는 것이다. 총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6.7.1.1.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총회 직원과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장래의 총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추천한다.
  - 6.7.1.2. 총회에서 특정 사역에 배정된 업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
  - 6.7.1.3. 가장 최근의 총회의 사업 항목과 관련된 활동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 **6.8. 총회장목사의 비전자문위원회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s Vision Advisory Committee**

6.8.1. 총회장 목사의 비전자문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총회장 목사에게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사명, 비전 및 정체성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의 비전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다.

6.8.1.1. 총회장 목사의 요청에 의해 자문위원회로서 봉사한다.

6.8.1.2. 다음에 대한 우려로 작업 우선 순위를 정한다:

6.8.1.2.1. 교회 일치와 세계 선교

6.8.1.2.2.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 선교

6.8.1.2.3. 고등교육 및 사회복지

6.8.1.2.4. 총회, 총이사회와 행정위원회

## **6.9. 총이사회 특별 대책본부 및 위원회 General Board Special Task Forces and Committees**

6.9.1. 총이사회는 행정위원회 제 8 항에 대한 현행 규정에 따라 특별(자문)위원회, 대책본부, 위원회 Commissions, 또는 패널 Panels 을 임명 할 수 있다.

## **7. 소멸시효규정 SUNSET RULES**

**7.1.** 총이사회가 위임한 모든 프로그램과 우선 순위는, 승인된 총이사회 사업 항목에 달리 명시되어있지 않는 한, 4 년으로 제한된다.

**7.2.** 이것은, 실행 가능 조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통치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8. 총회장 목사의 선거와 초빙 절차**

### **PROCEDURES FOR THE CALLING AND ELECTION OF THE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

#### **8.1. 행정위원회의 역할**

8.1.1. 탐색위원회의 회원을 선택한다 (8.2 참조).

8.1.2. 총회장 목사의 자격을 제정한다.

8.1.3. 탐색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명단을 받고 후보자 인터뷰를 시행한다 (8.6 참조).

8.1.4. 후보자를 지명하여 총이사회에 승인하고, 초빙과 선거를 위해 후보자를 총회에 보낸다.

8.1.5.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8.1.1, 2, 3, 4):

8.1.5.1. 행정위원회는 교회의 장래 방향과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실행위원회의 Executive Session 에서 적절한 양의 시간을 정리한다.

8.1.5.2. 행정위원회의 실행위원회가 시작될 때, 떠나는 총회장 목사는 행정위원회에 간단한 인사말을 하도록 요청받는다.

#### **8.2. 총회장 목사 후보 지명자를 위한 탐색위원회 위원 The Membership of the Search Committee for the Selection of Nominees for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

8.2.1. 탐색위원회는 11 명과 1 명의 대체요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2 명 중 6 명 이상이 실행위원 탐색 과정과 일치하는 유색인종<sup>7</sup>이다.

8.2.2.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8.2.2.1. 총회 의장

8.2.2.2. 행정위원회가 선출한 행정위원회의 지속적인 클래스 위원 2 명

8.2.2.3. 총이사회 위원 5 명은 다음과 같이 지명 되었다:

8.2.2.3.1. 총회 의장은 총이사회 의 지속적인 클래스 10 명의 리스트를 지명하며,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5 후보+ 1 대체위원을 선출한다.

8.2.2.3.1.1. 각 행정위원회 위원은 5 명의 후보자를 뽑기 위해 투표한다. 5 명의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받으면, 그 후보자가 선출된다. 5 명 이상이 총 표의 과반수를 얻으면 상위 5 명을 선출한다. 5 명 미만이 과반수를 얻는다면, 과반수를 득표하는 위원은 선출되고, 나머지 위원은 공석의 자리의 투표 수와 동일한 투표수를 가진 각 행정위원회 위원과 함께 공석의 자리를 위해서 투표된다. 이 과정은 8.2.1 에 따라 5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8.2.2.4. 대체위원 An Alternate

8.2.2.4.1. 총 투표수의 합계가 가장 많은 총이사회 후보자 10 명 중에서 탐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권이 없는 대체위원으로 지명된다.

8.2.2.4.2. 대체위원은 11 명의 투표 회원 중 1 명이 사망 또는 사퇴할 경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봉사한다.

8.2.2.5. 의장 The Chair

8.2.2.5.1. 총회 의장은 탐색위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지명한다.

### 8.3. 탐색위원회 과정 Search Committee Process

8.3.1. 탐색위원회는 총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이그제큐티브 탐색 모델 Executive Search Model<sup>8</sup>을 사용한다.

8.3.2. 정보 수집:

8.3.2.1. 탐색위원회는 총회행정사역 협의회 Council of General Ministries, 지역회장 협의회 College of Regional Ministers, 교회 Congregations 의 회원들의 의견을 구한다.

8.3.2.2. 총사무국 Gneral Office 의 직원은 탐색위원회가 특별히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탐색, 지명 및 선거 과정의 단계 또는 다른 단계에 어떠한 참여에도 면제된다.

---

<sup>7</sup> 유색 인종에 대해 고려해볼때, 공인된 제자교회 인종목회 Racial/Ethnic Ministries 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sup>8</sup> 이그제큐티브 탐색 모델은 총이사회 의 정책이다.

8.3.3. 탐색위원회는 자체직원을고용하고, 총회장목사 사무소를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 **8.4. 이름 요청 Soliciting of Names**

8.4.1. 탐색위원회는 총행정사역, 기관, 지역 및 넓게는 교회 회원들로부터 이름을 요청한다.

8.4.2. 탐색위원회는 일반 및 지역 교회 통신을 포함하는 교단 간행물을 통해 이름의 서면 제안을 받도록 요청한다.

8.4.3. 잠재적인 후보자는 반드시 크리스천교회(제자회) 탐색 및 전화 시스템에 있어야 한다.

#### **8.5. 인터뷰 Interviews**

8.5.1. 탐색위원회는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많은 사람을 인터뷰 한다.

8.5.2. 서면 진술서는 탐색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으로, 면담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전달한다.

#### **8.6. 탐색위원회 지명자 Search Committee Nominees**

8.6.1. 탐색위원회는 적어도 2 명 이상 5 명 이하의 지명자 명단을 행정위원회에 송부한다.

8.6.2. 탐색위원회는 각 지명자의 서면 진술서, 간결한 자격 진술서, 총회장 목사 직무 내용에 근거한 근무 적합성을 나타내는 의사의 서신을 포함한 전기자료를 행정위원회에 송부한다.

8.6.3. 이그제큐티브 탐색모델에서 요구하는 스크리너 보고서 Screener Report 는 제안된 후보자에 대한 행정위원회에 제공된다.

8.6.4. 이 정보는 가능한 한 빨리 행정위원회에 보내야하지만, 행정위원회투표가 있기 적어도 7 일 전에 투표자가 지명자에 대한 지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8.7. 행정위원회 후보자 추천 과정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Nominating Process**

8.7.1. 후보자 추천을 목적으로, 행정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8.7.1.1. 실행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언한다. 탐색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게스트 Guests, 투표권이 없는 회원 및 총회장 목사는 면제된다.

8.7.1.2. 실행위원회는 지명자 선정을 위해 회의 일정에 있어서 중간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8.7.1.3. 탐색위원회에 의해서 제출된 각 사람을 인터뷰한다.

8.7.1.4. 투표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명자를 선출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후보추천을 위해 출석한다.

8.7.1.4.1. 각자의 첫 번째 선택을 위해 비밀 투표를 하는 행정위원회의 각 위원과 토론할 시간이 할당된다.

8.7.1.4.2. 후보자가 투표 수의 2/3 이상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지명자이다.

8.7.1.4.3. 2 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고 2/3 의 표결이없는 경우,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투표 용지에서 제거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투표 용지를 받게된다.



8.7.1.4.4. 필요하다면 재 표결을 계속해야하며, 2 명의 후보자가 남을 때까지, 매 투표마다 투표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제거된다

8.7.1.4.5. 후보자 2 명만 남는 과정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는 동점자 중 새로운 표를 얻어, 후보자 중 누가 계속 후보자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8.7.1.4.6. 투표 용지가 두 후보자 사이에 있고 둘 다 투표자의 3분의 2 를 받지 못할 경우, 두 후보 간의 두 번째 투표 전에 후보자를 추가로 고려할 시간이 할당된다.

8.7.1.4.7. 세 번째 투표가 필요한 경우, 토론을 위해 시간이 할당된다.

8.7.1.4.8.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행정위원회는 탐색위원회에 총회장목사로서 기꺼이 봉사 할 자격이 있는 새로운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8.7.1.4.9. 이름을 받으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 (8.4, 5, 6, 7 절 참조).

### **8.8. 행정위원회에 지명자가있을 때 When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has a nominee**

8.8.1. 총이사회에 이름을 제출하기 전에, 고용 및 이주 항목에 관한 임시 교섭이 시작될 수 있다.

8.8.2. 총회장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고용주와 비밀 교섭을 수행 할 권한이 있다.

8.8.3. 총회장은 인사 정책 및 후보자와의 고용 계약에 관해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적합한 직원과 협의한다.

8.8.4. 총회장은 행정위원회의 결정 후 2 일 이내에, 서면 진술, 전기적 설명 및 간결한 자격 진술서를 총회에 송부한다.

### **8.9. 탐색위원회에 관한 총이사회 역할 The Role of the General Board Regarding the Search Committee**

8.9.1. 탐색위원회의 위원을 확인한다.

8.9.2. 총이사회가 위원회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8.9.2.1. 행정위원회는 본 규정 제 8.2 절에 따라 새로운위원회의 명칭으로 재소집한다.

### **8.10. 후보자에 관한 총이사회 역할 The Role of the General Board Regarding the Candidate**

8.10.1. 총이사회는 실행위원회의에서 소집되며 총이사회는 당연직 위원과 탐색위원회를 포함한다.

실행위원회의가 시작될 때, 총이사회는 퇴임하는 총회장 목사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요구한다.

8.10.2. 총이사회는 행정위원회의 지명자에 관한 다음 절차를 사용한다.

8.10.2.1. 지명자의 서면 진술서 및 탐색위원회가 제공한 자격 및 전기 정보에 대한 간결한 진술서를 검토한다.

- 8.10.2.2. 이사회 명세서의 적절한 곳에, 검색위원회 위원장은 총이사회에 이 시점까지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요약을 제시하고, 행정위원회의 지명자를 제시하며 토론 및 논쟁에 대한 모든 질문을 기입한다.
- 8.10.2.3. 총이사회는 총이사회 위원들이 후보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8.10.2.4. 선거 및 목회를 위한 총이사회에 지명자의 “이름을 전달” 하는 투표가 실시 된다.
- 8.10.2.5. 투표권을 행사하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8.10.2.6. 투표는 투표용지로 한다.
- 8.10.2.7. 호의적인 투표에 따라, 지명자는 총이사회에 공식 발언을 하도록 초대된다.
- 8.10.3. 지명자가 총이사회에 선출되면, 교회에 통보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다.<sup>9</sup>
- 8.10.4.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교회에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총이사회에서 3분의 2 표결로 총회에 직접 그 이름을 전달할 수 있다.

### 8.11. 승인 실패 Failure to Approve

총이사회가 지명자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위원회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또 다른 지명자를 선출한다. (8.7ff 참조)

### 8.12. 지명자에 관한 총회의 역할 The Role of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Nominee

8.12.1. 탐색위원회의 의장은 총회사업 의제인 “an Order of the Day 오늘의 순서”로서 다음을 수행한다.

- 8.12.1.1. 과정에 대한 자세한 요약 정보를 제시하고,
- 8.12.1.2. 지명자의 전기와 신임장을 공유하고
- 8.12.1.3. 토론과 논쟁에서 모든 질문에 답한다.
- 8.12.1.4. 총회의장은 사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 8.12.1.5. 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표결이 선거에 요구된다.
- 8.12.1.6. 선출시, 차기 총회장 목사는 총회에서 인사말을 할 시간을 갖게 된다.
- 8.12.1.7.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위원회는 차기 총회에 제출할 다른 지명자를 선출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므로, 도안 The Design 하에 책임을 진다.
- 8.12.1.8. 행정위원회는 차기 총회 때까지 활동하도록 총회장 목사의 이름으로 진행시킨다.

### 8.13. 재선 Re-election

8.13.1. 도안 The Design 은 총회장 목사가 6년의 기간으로 한번 재 선출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sup>10</sup> 선거에 대한 정기 조항은 제 8 절에서 설명한대로 적용된다.

---

<sup>9</sup> 도안 The Design 44

## 8.14. 사무소로 부터 해임 Removal from Office<sup>11</sup>

## 9.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총회장 목사 재선 과정 PROCESS FOR RE-ELECTION OF A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 9.1. 재심/탐색과 및 초빙위원회에 관한 행정위원회의 역할

9.1.1. 총회장 목사로부터 재선을 위해 교회 앞에 서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접수한다.<sup>12</sup>

9.1.2. 투표권이 없는 회원을 포함한 실행위원회의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선언한다.

9.1.2.1. 실행을 위한 행사스케줄 재심을 포함하여, 재선 과정을 추진할지 추진 안할지를 위한 투표를 한다.

9.1.2.2. 재심 / 탐색 및 초빙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해 8.2 절에 요약된 과정을 추진한다.

### 9.2. 이름 전달에 관한 행정위원회의 역할

####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Regarding Forwarding the Name

9.2.1. 후보자 추천할 목적으로 행정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9.2.1.1. 투표권이 없는 회원 및 재심 / 탐색 및 초빙위원회를 포함한 실행위원회의에서 선언한다. 기타 모든 게스트는 면제된다.

9.2.1.2. 재심 / 탐색 및 초빙위원회와 총회장 목사를 면제시키기 전에, 재심 / 탐색 및 초빙위원회의 정보를 재심하기 위해 총회장 목사를 만난다.

9.2.1.3. 다음 과정을 사용한다.

9.2.1.3.1. 토론을 위한 시간을 할당한다.

9.2.1.3.2. 현직 총회장 목사의 재선을 확인 또는 확인하지 않으려면 비밀 투표를 사용한다.

9.2.1.3.3. 후보자가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받지 못한 경우, 행정위원회는, 제 8 항에 명시된 과정을 사용하여, 전체 기간을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자를 찾기위해 탐색 및 초빙위원회<sup>13</sup>에 요청한다.

9.2.1.3.4. 후보자가 3분의 2 이상의 다수 표결로 승인되면, 9.5ff 절에 명시된대로 사업 항목을 총이사회와 총회<sup>14</sup>에 전달한다.

---

<sup>10</sup>도안 The Design 53b

<sup>11</sup>도안 The Design 53d

<sup>12</sup> 목회적 테이블 Pastoral Table 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과의 협의가 총회장목사의 분별 과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sup>13</sup>이전에 재심/탐색 및 초빙위원회라고했다.

<sup>14</sup>도안 The Design 44

### 9.3 재심/탐색위원회의 역할 Role of the Review / Search Committee

9.3.1 재심위원회는 8.2 절에 기술 된 바와 같이 탐색위원회처럼 설립되고, 따라서 재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탐색 및 초빙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9.3.2. 최소한 다음 해당자들에게 질문서를 전달한다:

9.3.2.1. 총회장 목사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봉사한 총이사회의 모든 위원

9.3.2.2. 모든 지방 회장 regional ministers 과 총회장 목사 GMP, 아프리카계 제자회총회 사무총장 Administra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Convocation, 전국 히스패닉계 목사 National Hispanic Pastor, 아시아 태평양계 제자회 실행목사 Executive Pastor of North American Pacific Asian Disciples.

9.3.2.3. 다음과 같은 선거구 그룹의 선출된 회장 또는 위원장: 여성국제제자회 International Disciples Women, 남성제자회총회 General Conference of Disciples Men, 청소년/청년총위원회 General Youth Council, and Young Adult Commission

9.3.2.4. 제자선교기금 Disciples Mission Fund 지원을받는 제자회와 관련된 신학교육기관의 최고실행위원 Chief executive officers.

9.1.1.1. 제자선교기금 Disciples Mission Fund 지원을받는 제자회와 관련된 신학교육기관의 최고실행위원 Chief executive officers.

9.1.1.2. 총회장 목사의 현재 임기 동안 근무한 전임 총회 의장 및 부회장.

9.1.1.3. 에큐메니컬 동료 5 명

9.1.1.4. 25 개 지방교회 회원: 교회를 선출 할 때, 재심 / 탐색 및 초빙위원회는 종족 / 민족의 다양성, 교회의 연령, 지리적 위치, 사역 환경을 고려한다.

9.1.2. 설문지는 총회장목사의 리더십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된다.

9.1.2.1. 목회적, 영적 리더십

9.1.2.2. 행정 리더십

9.1.2.3. 의사 소통 능력

9.1.2.4. 크리스천교회(제자회)를 위한 비전

9.1.2.5. 재심 / 탐색 및 초빙위원회와 공유할 기타 정보

9.1.2.6. 다음 임기에 관한 총회장 목사에 대한 권고

### 9.2. 재심/탐색 및 초빙위원회에 관한 총이사회의 역할 The Role of the General Board Regarding the Review/Search and Call Committee

9.2.1. 재심 / 탐색 및 초빙위원회 위원을 확인한다.

9.2.2. 총이사회가 위원회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행정위원회는이 규정의 8.2 절에 따라 새로운위원회를 지명하기 위하여 재소집한다.

### 9.3. 재선 후보자에 관한 총이사회의 역할

#### The Role of the General Board Regarding the Candidate for Re- election.

- 9.3.1. 총이사회는 실행위원회의에서 소집되며, 총이사회는 모든 당연직 위원과 재심/탐색 및 초빙위원회를 포함한다. 총이사회는 행정위원회의 지명자에 관한 다음 과정을 사용한다.
- 9.3.1.1. 탐색위원회 위원장은 총이사회에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요약은 제시하고, 재선에 관한 행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제시하며, 토론과 논쟁에 대한 모든 질문을 정리한다.
- 9.3.1.2. 지명자는 재선과 차기 임기에 관한 목표를 총이사회에서 연설한다.
- 9.3.1.3. 총이사회 위원은 지명자와 대화에 참여한다.
- 9.3.1.4. 재선을 위해 총회에 "이름제출 forward the name"를 위한 투표는 비밀 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 9.3.1.5. 투표는 현재 투표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 찬성이 필요하다.
- 9.3.2. 지명자가 선출되면, 총이사회는 그 결정을 교회에 알린다.
- 9.3.3. 교회가 통보받지 못하는 흔치 않은 상황의 경우, 총이사회는 2/3 표결로 그 이름을 직접 총회에 전달할 수 있다
- 9.3.4. 승인 실패  
총이사회가 지명자를 승인하지 않으면 행정위원회는 8.7ff 절의 절차를 따른다.

### 9.4. 지명자에 관한 총회의 역할 The Role of General Assembly Regarding the Nominee

- 9.4.1. 총회 비즈니스 의제에 대한 오늘의 순서 an Order of the Day 로서,
- 9.4.1.1. 탐색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 9.4.1.1.1. 재선 과정의 상세한 요약은 제시하고,
- 9.4.1.1.2. 지명자의 전기와 신임을 공유하며,
- 9.4.1.1.3. 후보자가 다른 조건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집회에 말하도록 초청하고,
- 9.4.1.1.4. 토론과 논쟁에서 질문에 답한다.<sup>15</sup>
- 9.4.1.2. 총회의장은 사업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 9.4.1.3. 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투표할 것을 요구한다.
- 9.4.1.4.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위원회는 다음을 행한다.
- 9.4.1.4.1. 재선 실패에 대해 지명자에게 알린다.
- 9.4.1.4.2. 총회장 목사로 봉사할 사람을 차기 총회 때까지 봉사하도록 지명한다.<sup>16</sup>
- 9.4.1.4.3. 도안 The Design 에 따라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할 다른 지명자를 선출한다

---

<sup>15</sup> 참조, 총이사회 절차에 대한 특별규정 7 절

<sup>16</sup> 참조, 도안 The Design :GMP 의 자격

## 10. 총회의 공개 회의 정책 준수

### COMPLIANCE WITH THE OPEN MEETINGS POLICY OF THE GENERAL ASSEMBLY

10.1. 총이사회는 총회의 공개회의 정책을 준수한다.

10.2. 총이사회는 두 가지 부류의 비이사회 위원을 승인한다.

10.3. 게스트

10.3.1. 게스트들은 총회의장이나 총회장 목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총이사회에 보고하는 특별 대책본부나 위원회 의장의 권유로 회의에 참석한다.

10.3.2. 게스트들은 그들이 초청된 특별 주제와 관련된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그룹에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10.3.3. 게스트는 총이사회에의 모든 공개회의에 초청된다.

10.3.4. 게스트는 회의에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의장, 의장 또는 소그룹 지도자로부터 추가 허가를 받는다.

10.3.5. 게스트를 위한 경비는 총회장 목사 사무실에 의해 제공된다.

## 10.4. 일반 방문자 Public Visitors

10.4.1. 일반 방문자는 회의에 참석하기로 선정된 크리스천교회 (제사회) 또는 대규모 공동체의 회원이다.

10.4.2. 일반 방문자는 총이사회에의 모든 공개회의에 초청된다.

10.4.3. 일반 방문자는 각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총회 의장, 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그룹 리더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결하고자하는 각 주제에 관해 회의의 맨 처음에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참여는 앞서 언급한 지도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10.4.4. 일반 방문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출석한다. 총회장 목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일반 방문자 및 / 또는 관련 사역에 청구된다.

## 11. 면책 INDEMNIFICATION

### 11.1 법인에 의한 면책 Indemnification by the Corporation.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 임원 또는 이사회 위원, 법인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었던 모든 사람 (및 그런 사람의 상속인 및 개인 대표자)은, (a) 그러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완전히 성공한 경우, 또는 (b)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본 규정 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 선의로 행동을 했거나, 법인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또는 협회의 최선의 이익에 반대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공식 능력을 법인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청구, 조치, 소송 또는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및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 법인에 의해 면책된다. 그리고 추가로, 형사 소송이나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도록(또는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도록) 결정된다

판결, 합의(법원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하여 또는 유죄 판결로, 불항쟁의 답변으로, 그와 동등한 것에 의한 청구, 조치, 소송 또는 소송진행의 종료로 인하여, 이 규정 11에 명시된 행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

### 11.2 정의 Definitions.

A) 규범 11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청구, 조치, 소송 또는 진행 claim, action, suit, or proceeding" 라는 항목은 위협적이며, 미결정 또는 완료된 청구, 조치, 소송 또는 진행 및 그에대한 모든 항소(이 법인체의 권리에서 또는 권리에 의해서 왔던지, 기타 법인체든지 또는 다른 것이든지)을 포함하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이든지, 개인(또는 그의 상속인 또는 인격 대리인)이 해당자로서 또는 다른방법으로서, 연루될 수 있는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수사를 포함한다:

- 1) 법인체의 요청에 따라, 근무한 도시 자치체나 법인체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이사, 임원 또는 위원이 된 이유로, 또는
- 2) 법인체의 요청에 따라, 근무한 법인체, 파트너십, 합작 투자, 협회, 신탁 또는 기타 조직 또는 단체에서 그 권한을 행한 이유로, 또는
- 3) 책임 또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서 그러한 권한을 계속 유지하든 안하든, 그러한 권한으로 취한 조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의 이유로 인하여

B) 이 규정 11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책임 Liability" 및 "비용 Expense"이란 항목은 이에 제한되지 않지만, 변호사 비용, 지출액 및 판결 금액, 벌금 또는 페널티, 그리고 사람에 의한 또는 사람을 대신하여 지불된 금액을 포함한다.

(c) 이 규정 11에서 사용된 "완전히 성공한 wholly successful"이라는 사항은 1)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나 죄책감을 발견함이 없다면, 그 문제의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 소송 또는 진행의 종료, 또한 2) 여기에 언급한 면책에 대한 지식과 함께, 어떤 조치, 소송 또는 진행의 해결에 대한 법원의 승인, 또는 3)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지불이나 약속없이, 동일한 소송기관도 없이, 청구의 제기 또는 조치, 소송, 또는 진행의 위협이 발생한 후,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를 의미한다

### 11.3 면책 자격 ENTITLEMENT TO INDEMNIFICATION

아래의 면책을 요구한 모든 사람(어떤 청구, 조치, 소송 또는 진행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제외하고)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a) 행정위원회가 선정한 어느 경우에도, 사심없는 정족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와 같은 상담인 또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중재인 Referee"이라 칭함), 법인체의 정규 변호인이 될 수있는 특별 독립 법률고문이나 기타 사심없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규정 11의 제 1절에 명시된 행위 기준에 부합하다는 서면 결과를 법인체에 전달경우, (b) 서면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행정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면책을 청구한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자 앞에 나타나고, 중재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답변하며, 면책에 의존하는 증거를 심판에게 제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체는 법인체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중재자의 판정과 관련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능한 사실, 의견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한다.

#### **11.4 기타 권리와 의 관계 Relationship to Other Rights.**

이 규정 11 에 규정된 면책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 **11.5 면책의 범위 Extent of Indemnification**

이 규정 제 11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행정위원회는 언제든지, 때때로,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 임원, 이사회 또는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인원의 면책을 승인 할 수 있으며, 또한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과거 또는 미래의 거래로 인해 그러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도까지 면책을 승인할 수 있다.

#### **11.6 비용의 선급 Advancement of Expenses**

청구, 조치, 소송 또는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보상금을받을 자격이없는 한, 그러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수령자를 대신하여, 또는 수령자를 대신하여 최종 처분되기 전에, 법인체에 의해(무관심한 정족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선급될 수 있다

#### **11.7 보험 구매 Purchase of Insurance**

행정위원회는 본 규정 제 11 조에 따른 법인체의 부채 및 채무를 담보하는 보험을 구입하고, 회사의 이사, 임원, 이사회 및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보호하는 보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